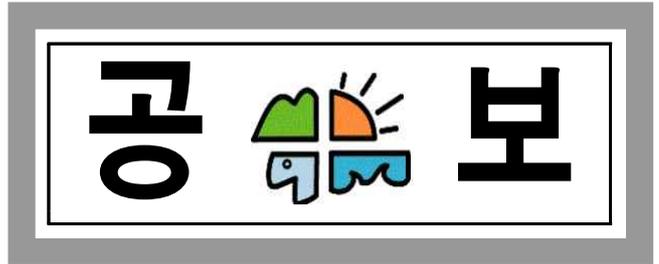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93호 2023년 10월 06일(금)

조례

-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4
-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7
-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 10
-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고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14

입법예고

-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5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45호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을 “시장이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으로 한다.

8.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정보화책임관”을 각각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정보격차의 해소

제19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정보취약계층 지능정보화사업)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과 그에 수반하는 통신비 지원
2. 맞춤형 콘텐츠 보급
3.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정보통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자
2.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정보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평가하거나 신규로 발굴하기 위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0조) 제1항 중 “제17조”를 “제19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비용을”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46호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22사단, 제102여단, 제303경비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 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속초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지원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

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47호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요양요원의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48호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속초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의료·심리치료 등 회복증진사업 지원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4.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방지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내용으로 정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내용으로 정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49호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저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야생생물이 각종 인공구조물로 인해 충돌·추락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
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2. “인공구조물”이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필요에 의해 설계· 건설
한 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생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해 충돌·추락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대책)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
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의 충돌·추락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
야 한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야생생물 탈출시설, 횡단이동시설, 회피유도시설 등의 설치
4. 그 밖에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것 외에 야생생물의 충돌·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권고에 따라 제1항의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사업을 실시하
고자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속초시 내의 인공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야생생물 충돌·추락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을 위하여 시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
당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50호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속초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택시의 차령)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속초시장

1. 하천의 명칭	쌍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속초시장(미래전략과)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수변공원 조성(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개 요	설악동 화채마을 수변공원 조성사업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속초시 설악동 산57-6, 설악동 산57-7
	면 적	2,23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10. 4.~2027. 12. 31.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속 초 시 장

1. 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속초시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추진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호)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라. 영양관리사업 추진(안 제5조)
- 마. 교육 및 조사(안 제6조~제7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해당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26.(목)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성 또는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1) 주 소 : 우)24855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36
속초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2) 연 락 처 : 전화(033-639-2198), 팩스(033-632-5751)
- 3) 전자문서 : keh1361@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33-639-21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자원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7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